

##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 제83조의 2(청문)에 따라 장애 정도 재판정 불응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2차례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 옥 포 2 동 장

- 공 고 명 :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5. 10. 22. (수) ~ 2025. 11. 5. (수) (14일간)
-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취소 사유	처분내용	청문 일시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김*영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대첩로 85, (옥포동, *****)	장애 정도 재판정 불응	장애인 등록 취소	2025. 11. 6. (목) (15:00)	1차 2025. 9. 23. 2차 2025.10. 16.	폐문부재

- 청문장소 : 옥포2동행정복지센터 2층 구.동장실

#### 5. 청문 시 유의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포2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055-639-68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